



제429회국회(정기회)  
제 1 차 국 방 위 원 회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양육비채권이 있는 경우 압류 근거 신설>  
■ 주호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712호)

2025. 9.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 수 환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  | 1 |
| III . 검토의견 ..... | 3 |

##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주호영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7. 24.
3. 회부연월일 : 2025. 7. 25.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연금을 받을 권리는 특정 단서 조항을 예외하면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연금수급권자와 그 가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연금급여의 압류금지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헌재 2018. 7. 26. 2016헌마260)에서 양육비채권은 본래 압류금지조항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채권일 뿐만 아니라 양육비채권의 강제집행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양육비채권자의 자녀양육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5인의 위헌의견이 있어, 양육비채권의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군인연금의 경우에도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수급권자에 대하여 양육비채권이 있는 경우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여 양육비채권을 충분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주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6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711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군인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양육비채권이 있는 경우에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4호 신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18조(권리의 보호)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8조(권리의 보호) ① -----<br>-----<br>-----. |
| 1. ~ 3. (생략)                                                                                | 1. ~ 3. (현행과 같음)                        |
| <u>&lt;신설&gt;</u>                                                                           | <u>4. 수급권자에 대하여 양육비</u>                 |
|                                                                                             | <u>채권이 있는 경우</u>                        |
| ②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

□ 현행법 제18조는 급여를 받을 권리<sup>1)</sup>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양도, 압류

1) 제7조(급여의 종류)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퇴직급여
  - 가. 퇴역연금
  - 나. 퇴역연금일시금
  - 다. 퇴역연금공제일시금
  - 라. 퇴직일시금
2. 퇴직유족급여
  - 가. 퇴역유족연금
  - 나. 퇴역유족연금부가금

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대부를 받기 위하여 국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이혼 등 사유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비 채권자는<sup>2)</sup> 현행법에 따른 급여 받을 권리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급여 수급권에 대하여 압류할 수 없는 실정임.

---

다.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

라. 퇴역유족연금일시금

마. 퇴직유족일시금

### 3. 퇴직수당

제8조(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제7조에 따른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의 청구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2)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양육비 채권자”란 양육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이거나 법정대리인 등 실질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양육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6. “양육비 채무자”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람(비양육부·모의 부모가 부양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비양육부·모의 부모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 ① 부 또는 모는 혼인상태 및 양육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의식주, 교육 및 건강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최적의 성장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비양육부·모는 양육부·모와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정하여진 양육비를 양육비 채권자에게 성실히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비양육부·모가 부양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비양육부·모의 부모가 지급하여야 한다.

□ 이에 개정안은 양육비 채권자가 급여받을 권리에 대해 압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무이행의 의도적 회피를 방지하고, 자녀 양육의 물질 기초를 이루는 재산권으로서의 양육비 채권을 충분히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서 공무원연금법의 압류금지조항 중 양육비채권에 관한 부분은 자녀양육권과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의견이 다수의견(5인)이었지만<sup>3)</sup>, 해당 결정에서 연금수급자가 생계비 이상의 연금 급여를 받으면서 채무이행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어려운 처지의 양육비 채권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으므로 입법자는 연금수급권자와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균형 있게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음.

□ 참고로, 내용상 이와 유사한 취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양육비채권이 있는 경우 압류 근거를 신설하는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sup>4)</sup>이 2025년 7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되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3) 「군인연금법」 제18조와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연금법」 제39조에 관한 위헌소송심판(2016헌마260)으로 위헌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6인)에는 이르지 못하여 기각되었음. ※참고자료 1. 참조

4) 의안번호 제2200776호 주호영의원 대표발의.

□ 다만, 주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육비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4호<sup>5)</sup>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하여 압류를 허용하도록 수정하여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공포되었다는 점에서, 동 개정안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음.<sup>6)</sup>

□ 국방부는 연금수급권자와 채권자의 이해관계 조정을 통한 양육비채권 보호 필요성,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의견, 동일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가결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개정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문구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수정동의한다는 입장임.

### [수정의견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수정의견                                                                       |
|------------------------------------------------------------------------------------------------|----------------------------------------------------------------------------|----------------------------------------------------------------------------|
| 제18조(권리의 보호) ①<br>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br>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 제18조(권리의 보호) ① -<br>-----<br>-----<br>-----, -<br>-----<br>-----<br>-----, | 제18조(권리의 보호) ① -<br>-----<br>-----<br>-----, -<br>-----<br>-----<br>-----, |

5) \*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4. 급여·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6) 동 개정안의 부칙 제2조도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의 부칙과 일치시키기 위한 자구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현행                                                                    | 개정안                                                                                                                                                                                                                                                                                               | 수정의견                                                                                                                                                                                                                                                                                                          |
|-----------------------------------------------------------------------|---------------------------------------------------------------------------------------------------------------------------------------------------------------------------------------------------------------------------------------------------------------------------------------------------|---------------------------------------------------------------------------------------------------------------------------------------------------------------------------------------------------------------------------------------------------------------------------------------------------------------|
| <p>하다.</p> <p>1. ~ 3. (생략)</p> <p><u>&lt;신설&gt;</u></p> <p>② (생략)</p> |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수급권자에 대하여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u></p> <p>② (현행과 같음)</p> <p><u>&lt;부칙&gt;</u></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의 압류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양육비채권이 성립한 경우(이 법 시행 당시 수급권자에게 양육 의무가 있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p> |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수급권자에 대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1항제4호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압류하는 경우</u></p> <p>② (현행과 같음)</p> <p><u>&lt;부칙&gt;</u></p> <p>(개정안과 같음)</p> <p>제2조(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의 압류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양육비채권(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양육비채권으로 한정한다.)이 확정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p> |

|              |
|--------------|
| 문 의 처        |
| 02)6788-5304 |

※ 참고자료 1. 헌법재판소 결정례

헌법재판소 2018. 7. 26.자 2016헌마260 전원합의체 결정  
[공무원연금법제조위헌확인]

**결정사항**

가. 공무원연금법상 급여를 받을 권리의 압류를 금지하는 구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고, 2016. 12. 27. 법률 제14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본문 중 “양도·압류”에 관한 부분, 공무원연금법(2016. 12. 27. 법률 제14476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제1항 본문 중 “양도·압류”에 관한 부분 및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압류를 금지한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제2항(이하 제32조 제1항 본문 중 “양도·압류”에 관한 부분을 ‘압류금지조항’이라 하고, 제32조 제2항을 ‘압류제한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압류금지조항의 개정 필요성**

**결정요지**

가.헌법재판소는 압류금지조항과 실질적으로 내용이 같은 구 공무원연금법(1982. 12. 28. 법률 제3586호로 전문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본문 중 “압류금지”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헌재 2000. 3. 30. 98헌마401등). 이 선례의 판단이 달라져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압류제한조항은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개월간의 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만의 압류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같은 내용의 민사집행법의 규정이 공무원연금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는 것을 주의적으로 확인한 규정에 불과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압류금지조항과 압류제한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 헌법재판소는 2000. 3. 30. 98헌마401등 결정에서 압류금지조항의 개정 필요성을 지적하였으나 18년이 지나도록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균형 있게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입법되지 않았다. 여전히 공무원연금수급자가 생계비 이상의 연금급여를 받으면서 채무이행을 의도적으로 회

피하는 경우 어려운 처지의 채권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으므로, 입법자는 연금수급권자와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균형 있게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여 압류금지조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 유남석의 압류금지조항에 대한 위헌의견

자녀양육권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국가가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36조 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및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도 보장하도록 하는 헌법 제37조 제1항으로부터 도출되는 기본권임과 동시에, 자녀가 정상적인 사회적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돌보아야 하는 부모의 헌법상 의무이고, 부모의 양육에 따라 자녀가 누리는 이익도 헌법의 보호를 받는 법익이다.

양육비채권은 부모가 실제로 공동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에, 부모의 공동부담으로 이루어지는 자녀 양육의 물적 기초를 이루는 재산권으로서, 자녀양육권과도 긴밀한 관련을 가진다.

공무원연금법은 수급권자 본인 뿐 아니라 그가 부양하여야 할 가족의 생활안정도 도모하고 있다. 그러므로 압류금지조항의 입법목적에는 수급권자의 자녀 등 부양가족의 생활을 보호하는 것이 포함된다. 그러나 수급권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양육비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공무원연금법상 수급권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와 양육대상인 자녀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상황이다. 이 경우 압류금지조항은 수급권자 본인과 그와 같이 사는 가족만의 생활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양육대상인 자녀의 생활보호를 도외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양육비를 법원이 정할 경우 부모의 소득 등 재산 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므로, 다른 채권에 비하여 양육비를 집행채권으로 하여 공무원연금 수급권에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수급권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가혹한 결과를 가져올 우려는 적다.

압류금지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수급권자 본인 및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생활보호와, 양육비채권자 및 양육대상 자녀의 법익 사이의 균형이 준수되었는지는 압류금지조항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와 있을 때의 법익의 보호정도를 비교함으로써 알 수 있다. 압류금지조항이 없더라도 민사집행법에 따라 수급권자 본인 및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은 보호를 받고, 양육비채권의 금액도 수급권자의 생계나 복리에 위해가 될 정도로 과다한 경우가 발생하기 어렵다. 반면, 압류금지조항은 공무원연금수급권 전부에 전혀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법원이

조정할 여지도 두고 있지 않으며, 연금액이 생계비를 넘어서는 다액이라도 예외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양육비채권자의 자녀양육권과 재산권에 가해지는 불이익의 정도는 심하다. 특히, 헌법 제36조 제1항의 혼인 및 가족생활의 보장은 미성년의 자녀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교육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의 자녀양육을 보호할 국가의 과제를 포함하고 있고, 양육비채권은 양육의 필수불가결한 물질 기초를 이루는 것과 동시에 부모가 헌법상 자녀양육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압류금지조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청구인의 자녀양육권과 재산권의 제한은 규범적 측면에서도 중대하다.

이와 같이, 압류금지조항 중 집행채권이 양육비채권인 경우는 법익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자녀양육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다만, 압류제한조항은 1개월간의 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압류를 제한할 뿐이어서, 수급권자 및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